

# 2022년 정부일자리 지원금 신청 안내

운영기관 :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



## ◆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

- ◆ 5인이상 중소기업등\*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, 최장 1년간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 (1인 최대 총 960만원 지원)

### ❖ 지원대상

#### ◆ 기업 조건

-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
※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 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

#### 5인 미만 예외 기업

- ①성장유망업종 ②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③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④신·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⑤청년창업기업 ⑥미래유망기업 ⑦지역주력산업 ⑧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

#### ◆ 청년 조건

-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(만15세~34세)  
(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)

#### (특례) 실업기간 연속 6개월 미만의 취업애로청년

- ①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③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
④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보호종료아동으로소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⑥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  
⑦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
### ❖ 근로조건

- ◆ ①정규직 입사(2022.01.01. ~ 2022.12.31.) ②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③최저임금 이상

### ❖ 사업신청 (<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>)

- ① 기업 신청 → ②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→ ③ 청년채용 및 명단통보 → ④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→ ⑤ 고용유지 및 지원금 신청

### ❖ 지원금 신청

- ◆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(최소고용유지기간) 이후 신청 가능  
※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사 또는 지원금 대상 기간에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

- ◆ 문의 : 055-295-2360, 261-2360, 283-2360

## ◆ 시니어인턴십

□ 참여기업 :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

□ 참여자 : 만 60세 이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

□ 참여제한

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, 타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자, 90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(그 외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기준에 따름)

□ 지원내용

일반형 : 입사일로부터 9개월 이상 근로계약 시 참여자 1인당 월 급여의 50%, 월 최대 40만원 씩 6개월간 지원 (1인 최대 총 240만원 지원)

체험형 : 입사일로부터 월 최대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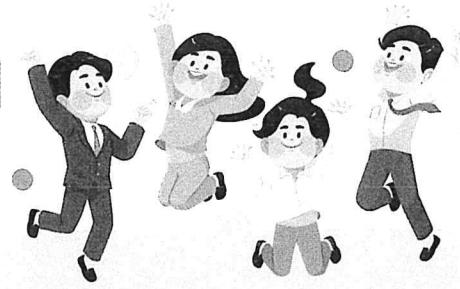
장기취업유지형 : 일반형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90만원 일시금 지급

세대통합형 :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(만18세~34세)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일시금 지원

◆ 문의 : 070-4203-5306, 283-2360

# 2022년 정부일자리 지원금 신청 안내

운영기관 :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



## ◆ 청년내일채움공제

- 참여기업 : 청년공제 가입(예정)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
\*소비향락업,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

- 참여자 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
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

□ 지원내용

- 청년 :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(매월 12만 5천원)을 적립하면 정부(취업지원금 600만 원)와 기업(300만원, 정부지원)이 공동적립. 2년 후 만기공제금 1,200만원+α
- 기업 :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- 지원 방식 구분

기업 규모	기업기여금(월 12만5천원 → 2년간 300만원 적립)		
	기업 부담 비율 및 금액	정부 지원 비율	
30인 미만	0%	0원	100%
30~49인	20%	(월 2만5천, 2년 60만원)	80%
50~199인	50%	(월 6만2천5백, 2년 150만원)	50%
200인 이상	100%	(월 12만5천, 2년 300만원)	0%

❖ 문의 : 055-603-2360, 070-4193-0533

## ◆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

- 기업의 우수인력 장기재직을 유도하고, 근로자에게는 목돈마련의 기회 제공  
사업주, 청년근로자, 정부가 5년간 공동적립 후 만기 시 청년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 지급
  - 가입요건 :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이상 재직한 만 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근로자  
(군 복무기간 추가 인정, 최대 만39세까지/사업주와 특수관계인 제외)
  - 가입기간 : 5년
  - 적립금액 : 청년 5년간 720만원(월 최소 12만원× 60개월)  
기업 5년간 1,200만원(월 최소 20만원× 60개월)  
정부 3년간 1,080만원(3년간 7회 분할 적립)
  - 공제지급이율 : 연복리(분기별 변동금리, 홈페이지에 금리 게시)
  - 기업혜택 :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손금(법인기업)또는 필요경비(개인기업) 인정  
기업납입금에 대하여 연구·개발비 세액공제  
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  
우수청년근로자 유입 핵심인력 양성 및 5년 이상 장기재직 촉진
  - 근로자 혜택 : 만기 후 본인납입금 대비 3~4배이상(세전)수령  
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% 상당 세액감면  
25개월 이상 가입유지 시 상해보험 가입
- ❖ 문의 : 070-4203-5306, 283-2360